



전라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

주택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제20조 별표1

2021.10.19.시행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거래금액 산정
1. 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 매 : 매매가격 • 교 환 :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• 분양권 :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	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	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	
2. 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세가 없는 경우 : 보증금 • 월세가 있는 경우 : 보증금+(월세×100) 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(재계산) : 보증금+(월세×70)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	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	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	

※ 중개보수 : 거래금액×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(단,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

오피스텔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, 제7항

2021.10.19.시행

적용대상	거래내용	상한요율	거래금액 산정
전용면적 85㎡이하 <small>(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것)</small>	매매·교환	1 천분의 5	「주택」과 같음
	임대차 등	1 천분의 4	
위 외의 경우	매매·교환, 임대차 등	1 천분의 (*) 이내에서 협의	



그 외(토지, 상가 등)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, 제7항

거래내용	상한요율	거래금액 산정
매매·교환, 임대차 등	1 천분의 (*)이내에서 협의	「주택」과 같음

※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*9 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,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.

기 타

1. 각종 실비 수수료

-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: 1건당 1,000원
-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: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
- 여비 등(교통비, 숙박비) : 실비

2.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

- 주택의 면적이 1/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
- 주택의 면적이 1/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

3.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.

4.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

※ 중개보수(주택, 오피스텔, 주택외)는 해당 상한요율(한도)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.